

# 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19,978,567	12,599,357
일반회계	400,662,187	12,019,866
특별회계	19,316,380	579,491
기타특별회계	19,316,380	579,49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23,632	27,70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097,299	32,919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390,837	11,725
주차장특별회계	296,097	8,883
수질개선특별회계	16,308,515	489,255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300,000	9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89,691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특별교부금(세), 인센티브 재정보전금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(성립전집행)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